

보사환경국소관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1992. 12

문교사회위원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1. 예산총괄

-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 규모
- 보사환경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 2. 예산개요

- 세항별·성질별 내역

## 3. 검토의견

- 총괄 및 세항별·성질별 내역

# 1. 예산총괄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93		(추경)		증(△)감	
	예산(안)	구성비 %	'92 예산	%		%
합 계	264,702	100.0	(283,121) 249,215	100.0	15,487	6.2
기 본 적 경 비	53,005	20	(51,032) 46,876	18.8	6,129	13.1
인 건 비	29,233	11	(26,118) 24,900	10	4,273	17.2
관서운영비	13,952	5.3	(13,392) 12,731	5.0	1,221	9.6
기본경상비	9,820	3.7	(11,522) 9,185	36.8	635	6.9
사 업 비	142,896	54	(171,164) 145,479	58.4	△ 2,583	△ 1.8
경상사업비	9,492	3.6	(15,445) 9,098	3.7	394	4.3
주요사업비	133,404	50.4	(155,723) 136,381	54.7	△ 2,977	△ 2.2
기 타 경 비	68,801	26	(60,921) 56,860	22.8	11,941	21.0

○ 199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규모는 2,647억 2백만원으로, 1992년도 당초예산 2,492억 1천 5백만원에 비하여 154억 8천 7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6.2%가 증가하였음.

□ 보사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93 예산		'92 당초예산액 (추 경)		증 (△) 감	
	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합 계	26,655	100.0	26,565 (29,394)	100.0	90	0.3
기본적 경비	3,561	13.4	2,835 (3,077)	10.7	726	25.6
인 건 비	2,017	7.6	1,638 (1,749)	6.2	379	23.1
관서운영비	777	2.9	643 (681)	2.4	134	20.8
기본경상비	767	2.9	554 (647)	2.1	213	38.4
사 업 비	20,600	77.3	21,441 (24,028)	80.7	△ 841	△ 3.9
경상사업비	740	2.8	691 (1,156)	2.6	49	7.1
주요사업비	19,860	74.5	20,750 (22,872)	78.1	△ 890	△ 4.3
기 타 경 비	2,494	9.3	2,289 (2,289)	8.6	205	8.9

○ 보사환경국소관 19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66억 5천 5백만원으로 1992년도 당초예산 265억 6천 5백만원에 비하여 9천만원 이 증액된 것으로 0.3%가 증가되었음.

○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은 2,647억 2백만원에 대하여 10.1%의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10.7%에 비하여 다소 감소된 것임

## 2. 예산 개요

첫째, 인건비는 20억 1천 7백만원으로 계상되어 '9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3.1%가 증가하여 3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둘째, 관서운영비는 7억 7천 7백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0.8% 증가된 1억3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셋째, 기본경상비는 7억 6천 7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바,

- 사회복지증진비	1천 1백만원 (2백만원 증)
- 노정관리비	3천 2백만원 (2천7백만원 증)
- 영세만보호비	5천 1백만원 (1백만원 증)
- 의료보험관리비	3억9천2백만원 (1억8백만원 증)
- 재해구호비	1백만원 (1백만원 증)
- 보건외정사업비	6천 9백만원 (5천6백만원 감)
- 의료원 운영비	1억1천6백만원 (1억1천6백만원 증)
- 보건기관운영비	6백만원 (증감없음)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	1천8백만원 (4백만원 증)
- 위생관리비	3천1백만원 (2백만원 감)
- 환경관리비	1천5백만원 (6백만원 증)
- 환경지도비	2천4백만원 (6백만원 증)

으로 9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8.4%가 증가된 2억 1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넷째, 경상사업비는 7억 4천만원으로

- 사회복지증진사업비 1억6백만원 (7백만원 감)
- 영세민보호사업비 5천만원 (증감 없음)
- 재해구호사업비 3억4천6백만원 (1억1천9백만원 증)
- 보건 의정사업비 3천3백만원 (1백만원 감)
- 보건환경연구사업비 2천9백만원 (5천9백만원 감)
- 위생관리사업비 1천7백만원 (2백만원 감)
- 환경관리사업비 9천6백만원 (1천만원 감)
- 환경지도사업비 6천3백만원 (9백만원 증)

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7.1% 증가된 4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다섯째, 주요사업비에 있어서는 198억 6천 1백만원으로

- 사회복지증진사업비 18억2천2백만원 (7억2천2백만원 감)
- 노정관리사업비 8천만원 (4백만원 감)
- 영세민보호 사업비 122억5천9백만원 (7억4천만원 감)
- 부랑인보호사업비 15억5천4백만원 (7억4천2백만원 증)
- 의료원운영사업비 28억1천7백만원 (12억4천4백만원 증)
- 보건기관운영사업비 6억7백만원 (1억7천6백만원 증)
- 보건환경연구사업비 9천3백만원 (9억6백만원 감)
- 환경관리 사업비 6억2천9백만원 (6억7천9백만원 감)

으로 91년도 당초예산보다 4.3% 감소된 8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음.

여섯째, 기타경비는 24억9천4백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8.9% 증가된 2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3. 검토의견

○ '93년 예산안 주요사업 투자 내용은

- 사회복지시설 기능강화, 저소득층 생계보호, 의료사업지원, 주민 보건향상,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 등으로,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33억1천2백만원의 사업비 중 국고에서 22억 6천 8백만원(69%), 지방비에서 10억4천4백만원(31%)을 계상하였으며,
  - 영세민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123억3천9백만원중 국고에서 106억6천3백만원(86%), 지방비에서 16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음.
  - 청주의료원의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28억1천7백만원을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여 도민 건강증진에 힘썼으며,
  -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쓰레기 분리보관용기 보급과 단양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을 위하여 6억2천9백만원이 투자되었음.
  - 또한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24억9천3백만원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등

보사환경국의 주요사업비는 투자적 성격보다는 최소한의 법정경비와 경상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으로 자체실정에 맞는 신규사업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 긴 안목에서의 시책추진이 바람직할 것임.

○ 1993년 예산안은 도 전체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안 2,647억2백만원중 266억5천5백만원의 규모로 10.1%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92년 당초 예산 265억 6천 5백만원에 비하여 0.3%에 해당하는 9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이를 경비별로 세분하여 분석해 보면

첫째, 인건비는 23.1%인 3억7천9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처우개선비가 93. 7. 1부터 3%인상되고, '92 당초에 비하여 환경지도과가 신설되는 등 공무원 정원이 10명이 증가된데 기인하고 있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

둘째, 관서운영비는 20.8%가 증가된 1억3천4백만원이 증액된것으로 환경지도과 시설에 따른 관서당 경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POOL 예산에서 국소관 예산으로 편성되는등 통상적인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셋째, 기본경상비는 38.4%인 2억1천3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의료보험 부담금이 공무원 정원 (일반 619명과 일용, 기타 직원 등) 이 증가되어 '92 당초예산에 비하여 1억 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의료원 직원 퇴직적립금 도비부담금 1억1천6백만원과

- 위생관리의 퇴폐, 변태, 시간외영업 단속 추진비,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외는 최소한의 행정활동을 위하여 경상적, 경직성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네째, 경상사업비는 7.1% 증가된 4천9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영세민 보호대책 추진 5천만원, 수질 및 공해방지추진비 5천만원,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책 추진비 5백만원의 사용계획과
  - 심야퇴폐 업소 단속요원 정보비와 공해배출 업소 전담요원 정보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재해구호 적립금 적립 목적,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외의 경비는 투자적 성격보다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복지시설 운영, 주민보건 향상, 환경보존 대책등 비 경직성 경비로 적절히 편성되었으나 소모적 경비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섯째, 주요사업비는 4.3% 감소된 8억9천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사회 복지시설 운영비, 영세민 보호, 환경관리비의 국고지원이 감소되었음.

- 사회복지 증진비는 7억2천2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국고 지원 사업에 따른 감액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
- 노정관리비는 청주 근로청소년 회관운영비로 8천만원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임.
- 영세민보호 사업비는 7억4천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국고 지원이 감액된 것 이외는 적절히 편성되었음.
- 부랑인보호 사업비는 7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 보조사업 이외 자체 사업이 없어 아쉬움이 있음.

- 의료원운영비 지원 28억1천7백만원은 청주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 짓기위한 지원으로 이견은 없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보건기관운영비로 1억7천6백만원이 증가되어 국고보조에 대한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나이동 진료사업비 5천5백만원, 나관리협회, 건강관리협회 장비보강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보건환경연구원운영 사업비는 9억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92년에 시설비 책정에 따른것 이외는 적절하게 편성되었음.
- 환경관리 사업에 있어 단양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자부담 30%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여섯째, 기타경비는 8.9%인 2억5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려는 것으로 별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國庫補助事業內譯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총사업비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합 계		30,839,927	23,858,847	7,122,440	1,724,698
일 반 회 계		18,370,850	13,883,582	2,314,314	1,724,698
○ 장애인보장구교부	157명	31,475	25,180	6,295	
○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개소	306,660	153,330	153,330	
○ 재가장애인순회재활 서비스센터운영	"	34,078	23,855	10,223	
○ 장애인재활의원운영비	충북재활의원	167,702	83,851	83,851	
○ 지역복지봉사센터운영	개소	27,400	19,180	8,220	
○ 장애인의료비지원	1,166명	18,167	14,534	3,633	
○ 장애인학비지원	59명	18,384	14,707	3,677	
○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3개소	102,234	71,564	30,670	
○ 사회복지관운영	4 "	230,400	115,200	-	115,200
○ 정신질환요양시설운영	7 "	754,084	603,267	150,817	
○ 지역복지봉사센터장비구입	"	12,000	8,400	3,600	
○ 정신질환요양시설기능보강	2개소	297,185	148,592	148,593	
○ 근로청소년회관운영	1 "	159,960	79,980	-	79,980
○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	14,758명	7,653,434	6,122,748	765,343	765,343
○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9,575"	3,194,715	2,555,772	319,471	319,472
○ 생활보호대상자수용구호	7개소	889,378	711,503	88,937	88,937
○ 생활보호대상자직업훈련	579명	415,027	415,027	-	
○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130명	972,093	777,674	-	194,419
○ 부랑인 보호	5개소	880,094	704,073	176,021	
○ 부랑인 시설신축 (살레시오의집)	1 "	333,678	166,839	166,839	
○ 부랑인시설오수처리장설치	1 "	304,000	170,000	170,000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총사업비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 마을건강원교육강사수당	1회/24시간	720	720	-	-
○ 보건진료원 " "	1회/24시간	720	720	-	-
○ 의약품품질관리용검체구입	300건	2,304	1,152	1,152	-
○ 전염병환자격리수용치료	10명	3,782	1,891	1,891	-
○ 보건진료원 교육보상	8명	14,414	14,414	-	-
○ 마을건강원교육강사여비보상	4명	177	177	-	-
○ 공중보건의진료활동비	4명	1,440	1,440	-	-
○ 공중보건의직무교육여비보상	110명	2,970	2,970	-	-
○ " " 급식보상	110 "	2,310	2,310	-	-
○ 보건진료소마을건강원교육	240 "	6,672	6,672	-	-
○ 공중보건의진료활동비	278 "	100,080	100,080	-	-
○ 가족계획시술권장비	946 "	946	946	-	-
○ 임신부영유아건강진단	1,457 "	5,802	2,901	-	2,901
○ 나양로수용시설생계비지원	30 "	21,102	10,551	10,551	-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600명	22,400	11,200	11,200	-
○ 보건소 증축(제천시)	50평	84,737	56,491	-	28,246
○ 보건소 장비보강	5개소	100,000	66,667	-	33,333
○ 보건소 X-Ray장비(음성)	1대	33,000	22,000	-	11,000
○ 보건지소신축(단양)	1개소	101,685	67,790	-	33,895
○ 보건지소 증축	3 "	101,685	67,790	-	33,895
○ 보건지소 장비보강	7 "	10,500	7,000	-	3,500
○ 보건진료소 신축(영동)	22.5평	38,132	25,422	-	12,710
○ 보건지소 열구전색용광선조사기	7 대	5,600	3,733	-	1,867
○ 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시설(단양)	1개소	540,000	540,000	-	-

1993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1992. 12

문교사회위원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1. 예산총괄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
-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

## 2. 예산개요

- 세항별 내역

## 3. 검토의견

- 세항별·성질별 내역

## 4. 참고자료

- 의료보호대상자·책임 현황
- 국,도비 내시 자료

# 1. 예산 (안) 총괄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관 별	93	구성비 (%)	(추경)		증 감	구상비 (%)	비고
	예산(안)		92 예산	구성비 (%)			
계	12,739	100 %	(12,582) 11,630	100 %	1,109	9.5 %	
사업외수입	2,764	22	(3,427) 2,475	22	289	11.7	
보 조 금	9,975	78	(9,155) 9,155	78	820	8.9	

□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93	(%) 구성비	(추경)		증 Δ 감	(%) 구성비
항 별		예산(안)		'92 예산	(%) 구성비		
계		12,739	100 %	(12,582) 11,630	100 %	1,109	9.5 %
기 금	소 계	174	1.4	(175) 112	1.0	62	55.3
	기금운영비	104	0.8	(104) 60	0.5	44	73.3
	사 무 비	70	0.5	(71) 52	0.5	18	34.6
의 료 보 호 비		12,420	97.5	(12,279) 11,385	97.9	1,035	9.1
예 비 비		145	1.1	(128) 133	1.1	12	9.0



## 2. 예산 개요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16억 3천만원에 비해 9.5% 증가되어 11억 9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세입예산안은 127억 3천 9백만원으로

사업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5% 증가된 11억 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 사업외수입은 27억 6천 4백만원으로

- 전년도이월금 1억원
- 용자금 (대불금) 수입 1천 5백만원
- 전입금 (일반회계) 24억 9천 4백만원 (2억 5백만원 증)
- 잡수입 (이자수입, 결산반환금) 1억 5천 5백만원 (8천 4백만원 증)

- 국고보조금은 99억 7천 5백만원 (8억 2천만원 증)

으로 의료보호사업비로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업비임.

○ 세출예산액은 127억 3천 9백만원

으로 전년도에 비해 9.5% 증가된 11억 9백만원으로 증액되었음.

-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수수료 4천 9백만원
-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수수료 5천만원
- 의료보호 대불금징수 독려 여비 9백만원
- 의료보호관리 서식 인쇄 1백만원
-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보조비 6천만원

등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경비임.

- 주요사업비 124억 2천만원  
은 도내 의료보호 1종, 2종 및 의료부조자 115,291명에 대한 진료비와 의료비 대불금으로 지급 될 사업비로 계상되었음.
- 기타경비 1억 4천 5백만원  
은 예비비로 계상된 것임.

### 3. 검토의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유지 무능자의 최저 생활보호를 위하여 국비와 도비에서 지원되는 기금으로 그 내용을 세분해 보면

- 세입에 있어서는
  - 국고보조금 99억 7천 5백만원
  - 도비부담금 24억 9천 4백만원
  - 순세계 잉여금 1억원
  - '92 결산 시군 반환금 1억 5천 5백만원등으로 의료보호를 위하여 대부분 국고와 도비에서 지원,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세입에 있어서는
  - 각종 수수료 1억 4백만원은  
보사부 지침에 의한 단가를 적용, 의료보험 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인원과 실적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고,

- 대불금 징수를 위한 예비 9백만원과
- 시군 의료보호 업무 사무보조비 6천만원 등은 의료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 사무비로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됨.
- 의료보호 진료비 시군보조 사업비는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대상인원에 대하여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적절히 계상되었음.
- 기타 경비 1억 4천 5백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전체 예산의 1.1%의 비중을 점하고 있어 적절한 계상임.

이상과 같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별 다른 이견이 없는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93醫療保護對象者現況

( 단위 : 명 )

시 근 별	계	1 증	2 증	의 료 부 조	비 고
합 계	115,291	30,570	78,568	6,153	
청 주	21,772	3,902	17,470	400	
충 주	8,550	1,559	6,134	857	
제 천	4,826	1,086	3,132	608	
청 원	9,431	2,323	6,127	981	
보 은	6,908	1,799	4,586	523	
목 천	6,798	2,099	4,512	187	
영 동	8,291	1,924	5,426	941	
진 천	6,000	1,223	3,932	845	
괴 산	11,178	2,398	8,592	188	
음 성	19,926	8,869	10,839	218	
중 원	6,011	1,372	4,469	170	
제 권	2,489	900	1,415	174	
단 양	3,111	1,116	1,934	61	

# ○ 국.도비 보조내시 자료

(단위 : 명.백만원)

구분 시군별	사업량	재원별			비고
		계	국비	도비	
합계	115,291	12,529	9,975	2,554	
청주	21,772	2,138	1,702	436	
충주	8,550	821	650	171	
제천	4,826	458	364	94	
청원	9,431	906	718	188	
보은	6,908	667	531	136	
옥천	6,798	668	533	135	
영동	8,291	789	629	160	
진천	6,000	565	450	115	
괴산	11,178	1,096	875	221	
음성	19,926	1,983	1,579	404	
충원	6,011	589	469	120	
제천	2,489	243	193	50	
단양	3,111	308	245	53	
도청		1,298	1,037	261	

1993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1992. 12

문교사회위원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1. 예산총괄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
-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

## 2. 예산개요

- 세항별 내역

## 3. 검토의견

- 세항별·성질별 내역

## 4. 참고자료

-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현황
- 국,도비 내시 자료



# 1. 예산(안) 총괄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관 별	'93		(추경)		증 감	구성비 (%)	비고
	예산(안)	구성비 (%)	'92 예산	구성비 (%)			
계	12,739	100 %	(12,582) 11,630	100 %	1,109	9.5 %	
사업외수입	2,764	22	(3,427) 2,475	22	289	11.7	
보조금	9,975	78	(9,155) 9,155	78	820	8.9	

□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항 별	'93		(추경)		증△감	구성비 (%)	
	예산(안)	구성비 (%)	'92 예산	구성비 (%)			
계	12,739	100 %	(12,582) 11,630	100 %	1,109	9.5 %	
기 금	소 계	174	1.4	(175) 112	1.0	62	55.3
	기금운영비	104	0.8	(104) 60	0.5	44	73.3
	사무비	70	0.5	(71) 52	0.5	18	34.6
의료보호비	12,420	97.5	(12,279) 11,385	97.9	1,035	9.1	
예비비	145	1.1	(128) 133	1.1	12	9.0	

## 2. 예산 개요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16억 3천만원에 비해 9.5% 증가되어 11억 9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세입예산안은 127억 3천 9백만원으로

사업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5% 증가된 11억 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 사업외수입은 27억 6천 4백만원으로

- 전년도이월금 1억원
- 용자금 (대불금) 수입 1천 5백만원
- 전입금 (일반회계) 24억 9천 4백만원 (2억 5백만원 증)
- 잡수입 (이자수입, 결산반환금) 1억 5천 5백만원 (8천 4백만원 증)
- 국고보조금은 99억 7천 5백만원 (8억 2천만원 증)

으로 의료보호사업비로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업비임.

○ 세출예산액은 127억 3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5% 증가된 11억 9백만원으로 증액되었음.

-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수수료 4천 9백만원
-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수수료 5천만원
- 의료보호 대불금징수 득려 여비 9백만원
- 의료보호관리 서식 인쇄 1백만원
-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보조비 6천만원

등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경비임.

- 주요사업비 124억 2천만원  
 은 도내 의료보호 1종, 2종 및 의료부조자 115,291명에 대한 진료비  
 와 의료비 대불금으로 지급 될 사업비로 계상되었음.
- 기타경비 1억 4천 5백만원  
 은 예비비로 계상된 것임.

### 3. 검토의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유지 무능  
 자의 최저 생활보호를 위하여 국비와 도비에서 지원되는 기금으로  
 그 내용을 세분해 보면

○ 세입에 있어서는

- 국고보조금 99억 7천 5백만원
- 도비부담금 24억 9천 4백만원
- 순세계 잉여금 1억원
- '92 결산 시군 반환금 1억 5천 5백만원등으로 의료보호를 위하여  
 대부분 국고와 도비에서 지원,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세입에 있어서는

- 각종 수수료 1억 4백만원은  
 보사부 지침에 의한 단가를 적용, 의료보험 연합회와 계약을 체결  
 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인원과 실적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고,

- 대불금 징수를 위한 여비 9백만원과
- 시군 의료보호 업무 사무보조비 6천만원 등은 의료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 사무비로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됨.
- 의료보호 진료비 시군보조 사업비는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대상인원에 대하여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적절히 계상되었음.
- 기타 경비 1억 4천 5백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전체 예산의 1.1%의 비중을 점하고 있어 적절한 계상임.

이상과 같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별 다른 이견이 없는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 93醫療保護對象者現況

( 단 위 : 명 )

시 근 별	계	1 증	2 증	의 료 부 조	비 고
합 계	115,291	30,570	78,568	6,153	
청 주	21,772	3,902	17,470	400	
충 주	8,550	1,559	6,134	857	
제 천	4,826	1,086	3,132	608	
청 원	9,431	2,323	6,127	981	
보 은	6,908	1,799	4,586	523	
유 천	6,798	2,099	4,512	187	
평 립	3,291	1,924	5,426	941	
진 천	6,000	1,223	3,932	845	
보 산	11,178	2,398	8,592	188	
영 양	19,926	8,869	10,839	218	
영 권	6,011	1,372	4,469	170	
제 천	2,489	900	1,415	174	
단 양	3,111	1,116	1,934	61	

# ○ 국.도비 보조내시 자료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시군별	사업량	재원별			비고
		계	국비	도비	
합계	115,291	12,529	9,975	2,554	
경주	21,772	2,138	1,702	436	
충주	8,550	821	650	171	
제천	4,826	458	364	94	
경원	9,431	906	718	188	
피음	6,908	667	531	136	
아전	6,798	668	533	135	
봉양	8,291	789	629	160	
진천	6,000	565	450	115	
곡산	11,178	1,096	875	221	
애경	19,926	1,983	1,579	404	
봉원	6,011	589	469	120	
제천	2,489	243	193	50	
간양	3,111	308	245	53	
보령		1,298	1,037	261	